

2023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

의안 번호	274
----------	-----

제의연월일 : 2024. 3. 4.

제 의 자 : 의 장

1. 제의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김해시 세입·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「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검사위원은 6명으로 시의원 2명, 세무사 2명, 회계사 2명으로 함.
- 나. 시의원 중 대표위원 1인을 정함.
- 다. 활동기간은 20일간으로 함. (2024. 4. 25. ~ 5. 14.)

3. 참고자료

- 가. 관계법령
 - 지방자치법 제150조(결산)
 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및 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
 -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
(선임방법 및 절차)

2023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

2023회계연도 김해시 세입·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「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
1. 결산검사위원

직위	성명	구분	비고
계	6명		
대표위원	박은희	시의원	
위원	김주섭	시의원	
위원	박재형	세무사	한국세무사회 김해시지회 추천
위원	우세준	세무사	
위원	김진규	회계사	한국공인회계사회 김해시지회 추천
위원	박재성	회계사	

2. 활동기간 : 2024. 4. 25. ~ 5. 14.(20일간)